

## 직권 조치 결과 공고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
2023년 08월 28일

농소1동장 

세대주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소	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
심 *금	심 *금 1949-08-17	울산광역시 북구 호계3길 (호계동)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3-08-16
박 *업	박 *업 1957-01-15	울산광역시 북구 호계3길 (호계동)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3-08-16
최 *환	최 *환 1978-09-25	울산광역시 북구 동대6길 (호계동)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3-08-16

